



고신 헌법(교회정치) 및 헌법적 규칙에 나타난 교회개혁

2007년 고신 총회의 결정으로 3000교회운동이 시작되어 지난 8월 25일 44호 교회가 개척되었는데(“총회 3000교회운동 44호 개척,” 기독교보, 2009년 9월 5일), 필자는 이 교회개혁운동이 고신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뻗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신의 교회개혁 실행 과정에 대한 기본적 동기가 교회 헌법의 교회정치와 헌법적 규칙 안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그에 대한 보충이나 수정이 필요한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또한 헌법개정위원회가 고신 헌법 1992년판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교회개혁에 대한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교회개혁은 교회정치 및 헌법적 규칙에 어떻게 언급되어 있나?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교회개혁이란 기존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장로교회로서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 면모를 갖추기까지의 준비 및 시작, 진행, 완료의 전 과정의 사역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Shin Chul Lee, *An Exploration and Identification of a Consistent Model for Presbyterian Church Planting in Korea*, 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les, Lampeter, 2009, 2). 그러나 필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1992년판 고신 교회헌법의 교회정치 편에 교회개혁을 다루고 있는 집약된 항목은 없으며, 산발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약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필자가 교회정치 편에 나타나 있는 교회개혁에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찾은 것은 “개체교회의 설립”(제2장 14조)이라는 항목이다. 그 항목의 내용은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제2장 14조)는 것이다. 제12장 93조에서도 개체교회의 설립은 노회의 열거된 직무들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개혁목사(또는 사역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전혀 없다. 다만, 전도목사를 “상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제5장 34조)라고 함으로써 전도목사의 파송에 교회개혁이 전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교회정치 편에 ‘개체교회의 분립’(제2장 15조)은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회의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분립은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개체교회의 설립이긴 하나, 그것이 미조직교회의 설립인지, 조직교회의 설립인지 분명치 않다. 분립을 통해 설립될 교회가 이미 조직교회의 규모를 갖추었다면 그것을 분립을 통한 교회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상이 교회정치 편에 나타나 있는 교회개혁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너무 미흡하다.

이에 비하면 헌법적 규칙은 교회설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언급을 담고 있다. 개체교회의 설립기준(제1장 제1조)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개체교회의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체교회 설립(분립: 분립청원 시에는 당회와 공동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만 설립 청원과 다르며, 다른 제출서

류들은 동일하다. 헌법적 규칙 제1장 제2조 10항 참고) 청원 시에 제출할 서류(제1장 제2조) 중에 “4. 장년 신자수와 가정 수”와 함께 “6. 예배당 상황”과 “7. 교회의 경제적 운영상황”도 포함되어 있어, 교회설립에는 장년교인의 확보는 물론이고, 시설과 재정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8. 부근 교회와의 거리”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체교회의 설립 신청은 해당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제1장 제3조), 노회는 설립될 교회 및 그 장소의 형편과 여건을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하게 되어 있다. (제1장 제4조) 장년교인 20명이 교회설립에 충분한가 하는 것은 차후에 논의하겠지만, 위의 기준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개체교회가 설립되기까지 적어도 장년교인 20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며, 예배장소의 시설 및 기본적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6조는 “개체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장년교인수가 20명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본 규칙 제1장 제2조 및 동 제3조의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고 함으로써 개체교회의 설립 기준을 개체교회의 존립의 검증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장년교인이 20명 미만이 되어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도소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강제성을 띤 규정이 아니고, 노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체교회 설립 이전의 개척초기의 모임을 기도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제1장 제14조에 보면, 개체교회로 설립되기 이전의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지명하고 있으나, 제3장 제23조에 보면 “전도 목사는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교회설립허가 이전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기도소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적 규칙으로 보면 두 용어의 병용이 가능한 것 같으나, 설립 이전의 새 예배회중에 대해서는 개척교회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설립된 개체교회였으나 다시 그 설립기준에 미달된 모임을 개척교회라고 다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기도소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적 규칙 제1장 14조는 “개척교회의 관리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설립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설립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노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개척교회에 대한 정의는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회정치 제2장 제14조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개체교회의 설립이전에 일정한 교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예배를 위하여 회집할 때, 그 예배회중을 개척교회로 간주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제14조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는 설립 이전의 예배회중인 개척교회와 설립 이후에 노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개체교회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개체교회 설립 이전의 개척교회의 관리는 노회의 소관이 아니라, 그 개척교회를 시작한 교회(모교회라고 하자)의 소관이라고 한 점이다. 그 모교회가 개척교회와 같은 노회 지역 내에 있든지, 다른 노회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개체교회로 설립이 되기까지는,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교회개척사역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헌법적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도목사, 강도사, 전도인 등이 교회개척사역에 관여할 수 있음을 관련된 항목들을 취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전도목사는 “상회(노회 또는 총회)

의 파송을 받아 (국내의)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교회정치 제5장 제34조 4항 ; 괄호 안의 단어는 필자가 삽입한 것임)인데, 그 파송의 목적이 교회의 설립에 있으므로, 교회설립 이후에는 그의 임무가 완료된다고 보고, 설립이후에도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제3장 제23조) 고 한 것이다. “농어촌의 미조직교회, 미자립교회 또는 개척교회에서 단독으로 1년 이상 시무 후에 목사로 임직 받을 수 있다(단, 목사 임직 후, 1년간 계속 시무하여야 한다)”(제3장 제5조 3항)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강도사도 개척사역자가 될 수 있다. 개척교회는 전도인을 선정하여 복음전도의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다(제3장 제39조)고 함으로써 전도인이 복음전도를 통하여 교회개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상이 헌법적 규칙이 교회개척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의 전부이다. 이런 관련 규정들이 너무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불충분한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회개척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세부사항을 교회개척매뉴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다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기존 헌법의 교회정치와 헌법적 규칙을 통합한 새로운 교회정치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므로, 교회개척과 관련하여 우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교회개척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들.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주제는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척교회의 관리와 교회설립에 한정되어 있는 교회정치 및 헌법적 규칙의 교회개척의 규정들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정치나 헌법적 규칙에서 교회개척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교회개척을 시작과 진행과 종료가 있는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다루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부분적 설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개척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 종료되는가?

교회정치와 헌법적 규칙을 통틀어서 교회개척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적 규칙에 보면 개척교회의 관리를 모교회에 일임하고, 노회는 개척교회의 설립청원의 적합, 부적합만을 판정하여 허락 여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개척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동의가 총회적 차원에서 마련될 수 없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개척사역자가 지명되어 있어야 하고, 기존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새로운 교회개척에 뜻을 같이 하는 핵심 멤버가 있어야 하며, 그 동안 전도한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회심에 이르게 된 새로운 개종자들이 있어야 새로운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척교회가 시작되기까지의 준비를 위해서는 모교회의 주도적 의지가 필수적이지만, 개척교회로서의 시작을 위하여 준비된 상황을 점검하고 그 시작을 인준하는 것은 모교회 보다 노회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개척교회는 따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회중으로서 설교와 성례를 행하기 때문에, 모교회와의 연속적 관계에 놓기보다, 노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장로교회에 있어서 교회개척에 대한 노회의 역할이 현재의 헌법적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척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착각하

는 일이 많은데, 개정된 교회정치 편에 개척교회의 시작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런 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회개척이 언제 완료되는가? 전도목사 또는 개척사역자의 임무는 교회설립으로 종료되는가? 이것은 교회개척의 목표가 무엇이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의 장로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장로교회의 기본적 면모가 되는 당회를 조직하기까지, 즉 조직교회를 설립하기까지 교회개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신의 교회정치나 헌법적 규칙에서는 개체교회에 미조직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체교회가 아직 미조직교회인데도 노회의 설립허락을 받으면 교회개척이 종료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그 개체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일 뿐이다.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장로교적 개체교회(Presbyterian particular church)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치리장로를 선출하고 장립함으로써 조직된”(is ... organized ... by ... the election and ordination of one or more Ruling Elders : J. Aspinwell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 4th ed.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86), 30, 재인용, Shin Chul Lee, op. cit., 284) 교회라고 함으로써 개체교회는 단순히 20명의 교인을 확보한 교회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치리장로 한 명 이상이 장립된 교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문답조례는 개체교회를 말할 때에 위임목사와 장로 또는 장로들로 구성되는 당회의 조직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통장로교회는 개체교회(a particular church)를 하나의 조직교회(an organized church)라고 보며(The Committee on Home Missions and Church Extension of the Orthodox Church, Planting an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Willow Grove, Penn.: 2002), 90), 교회개

척사역자는 “(교회)조직(을 맡은) 목사”(organizing minister)로서 개척초기부터 조직교회가 되기까지 교회개척사역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는 적어도 목사 1명에 치리장로 1명으로 구성되는 준당회가 조직되어야 장로교회로서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장로교회 교회개척의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척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개척교회는 아직 노회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지만, 개척교회로 설립 허락된 미조직교회에,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 당회장을 별도로 파송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인 것 같다. 그리고 헌법적 규칙에 전도목사를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한다고 한 구절은 이미 교회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는 국내의 상황에서 전도목사의 파송을 극히 제한시킬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이 구절을 “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하여”로 변경한다면, 전도목사의 명칭을 교회개척목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개척사역자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그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개척교회와 기도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보다, 설립이 허락된 교회가 설립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만 기도소라고 하고, 새로 시작된 예배회중은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